

# **코로나19 어린이집 긴급보육 관련 Q&A**

2020. 9. 1.

**보건복지부  
보육정책관**

# 순 서

## I. 어린이집 운영 관련 ..... 1

1. 긴급보육 이용 자격, 가정돌봄 가능 여부에 대한 의견 차이,  
가정돌봄이 가능한데도 등원을 하려는 경우 등이 있는데?
2. 긴급보육 시 어린이집 운영시간은?
3. 연령통합보육은 가능한지?
4. 일명 투담임제는 가능한지?
5. 차량운행은 해도 되는지?

## II. 교사 근무 관련 ..... 2

1. 긴급보육 시 교사 근무는 어떻게 하면 되는지?
2. 최소한의 인원 배치(순번제 등 실시)의 적용 범위는?
3. 원 운영에 따른 교사 미출근 시 인건비는 정상 지급되는지?  
3-1. 연장보육교사, 보조교사, 야간연장보육교사 등에 대한 인건비  
지급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는지?
4. 연장교사는 어떻게 근무해야 하는지?
5. 순번제, 탄력근무 등에 따른 미출근 시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?
6. 교사에게 폐이백을 강요하는 경우에 대한 대처는?

## 1

## 어린이집 운영 관련

1. 긴급보육 이용 자격, 가정돌봄 가능 여부에 대한 의견 차이, 가정돌봄이 가능한데도 등원을 하려는 경우 등이 있는데?

- 맞벌이, 다자녀, 취약계층 등 입소 당시 제출한 내용을 근거로 가정돌봄 가능 여부를 판단하되,
  - 당초 가정돌봄이 가능했던 보호자도 간병, 파트타임, 임신, 병원 진료 등 돌봄이 어려운 각종 개인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어린이집에 상황을 설명하고 긴급보육을 이용할 수 있을 것임
- 가정에서 아이를 돌볼 수 있는 여건이 될 경우, 아이와 보호자의 감염 예방을 위해 어린이집에 보내지 않도록 협조 필요
  - \* 원-보호자 간 원만한 관계 형성을 고려하여 서류 요구 등은 지양

2. 긴급보육 시 어린이집 운영시간은?

- 7:30~19:30 원칙으로 어린이집 자의적으로 단축 보육 금지
  - 단, 수요가 없을 경우에 한하여 탄력 운영 가능

3. 연령통합보육은 가능한지?

- 긴급보육 시에는 반별 보육을 기본으로 하되,
  - 반별 등원 아동이 적어 통합보육을 하는 경우에는 통합반 인원의 가장 낮은 연령반 기준으로 정원의 50% 이하인 경우에만 가능

#### 4. 한 보육실 내 2개 이상의 반 보육(일명 투담임제)는 가능한지?

- 이번 긴급보육 제한 및 교사 교대근무의 취지는 어린이집 내 접촉을 최소화하는 것이므로 한 공간에서 활동하는 아동의 수를 최대한 줄여주시기 바람
  - 따라서, 가급적 긴급보육 기간에는 한 보육실 내 2개 이상 반 보육을 자제하여 주시기 바람

#### 5. 차량운행은 해도 되는지?

- 차량운행 여부, 횟수, 시간은 긴급보육 수요에 따라 보호자와 협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원칙(보육사업안내 81쪽)
  - \* 차량운행비 지급 및 환불 등의 사항도 보호자와 협의하여 결정
- 가급적 도보·자가용으로 등·하원토록 권고하고 불가피하게 차량 운행 시 아동·운전자·동승자 전원 마스크 착용, 환기 및 운행 전·후 소독

2

## 교사 근무 관련

#### 1. 긴급보육 시 교사 근무는 어떻게 하면 되는지?

- 일별 순번제, 당번교사 배치 등을 통해 일일 근무 인원을 최소한으로 줄여주시기 바람
  - 이번 등원제한 조치의 목적은 어린이집 내 등원·출근 인원을 최소화하여 상호 접촉을 줄여 감염 가능성을 방지하는 데에 있음

## 2. 최소한의 인원 배치(순번제 등 실시)의 적용 범위는?

- 원내 밀집도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로 모든 교사들이 해당됨
  - \* 다만, 연장보육교사의 경우 연장보육 이용 수요를 고려할 필요

## 3. 원 운영에 따른 교사 미출근 시 인건비는 정상 지급되는지?

- 인건비, 수당은 정상 지급됨
- 민간·가정 등 정부 인건비 미지원시설의 경우에는 보육료가 정상 지급되므로, 인건비를 정상 지급해야 함

### 3-1. 연장보육교사, 보조교사, 야간연장보육교사 등에 대한 인건비 지급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는지?

- 연장보육 교사 등 전액 국고지원 인력<sup>\*</sup>에 대하여는 「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이 적용되므로 각 국고지원사업에서 규정하고 있는 임금 정상 지급
  - \* 보조교사(영아반, 누리반), 연장보육교사, 시간제보육 제공기관 교사, 야간 연장보육교사 등

## 4. 연장교사는 어떻게 근무해야 하는지?

- 긴급보육 아동의 연장보육 수요가 있을 경우에는 안정적 보육을 위해 연장보육반 운영시간(19:30)까지 근무하는 것이 원칙
    - 다만,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조치 기간에 한하여 연장보육 이용 수요에 맞춰 탄력 근무 가능
- ※ 야간연장보육도 운영시간 준수를 기본으로 하되, 수요에 따라 탄력 근무 가능

## 5. 순번제, 탄력근무 등에 따른 미출근 시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?

- 별도의 유급휴가로 처리하고, 교사 개인연차 잔여일수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음

## 6. 교사에게 페이백을 강요하는 경우에 대한 대처는?

- 페이백 강요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조치하겠음
- 「어린이집 이용 불편신고 센터」(보건복지부) 등 관계 기관<sup>\*</sup>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람
  - \*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([www.childcare.go.kr](http://www.childcare.go.kr)), 복지로([www.bokjiro.go.kr](http://www.bokjiro.go.kr))  
국민권익위 청렴포털([www.clean.go.kr](http://www.clean.go.kr)), 고용노동부 민원마당(<https://minwon.moel.go.kr>)